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213

발의연월일: 2025. 1. 2.

발 의 자:김예지·최수진·김소희

장동혁 · 조경태 · 강대식

서천호 • 주호영 • 서미화

이종배 • 진종오 • 정성국

의원(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착륙 하는 과정에서 방위 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활주 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에 충돌하면서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하 였음.

이에 반해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동체착륙 사고 역시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하였으나, 동 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되어 사망자 없이 일부부상자만 발생한 바 있음.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의 원인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방위각제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

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 써 항공기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 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이란 접근활주로의 시단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버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대칭으로 착륙대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 2.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장비 및 시설을 정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구역(활주로 종단안전 구역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에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 및 시설은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

소화 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며 최소 중량 및 높이 로 설치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3의2.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
	unway end safety area)"o]
	란 접근활주로의 시단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버
	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
	선에 대칭으로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
	<u>다.</u>
14. ~ 20. (생 략)	14. ~ 20. (현행과 같음)
제24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제24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의 설치기준 등) (생 략)	의 설치기준 등)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기준
	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항
	공기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2.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장비 및 시설을 정착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활 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 접구역(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에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 및 시설은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 며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 할 것